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6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양경숙·홍성국·주철현

김경만 • 박홍근 • 민홍철

이용우 · 최종유 · 권인숙

윤미향 의원(10명)

제안이유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에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는 등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화폐의 기능만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 화로서 거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법원의 판단 또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 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의 인정 과 함께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안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 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7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안 제104조제1항제1 4호 신설 및 안 제104조제6항).
- 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함(안 제105조제 1항제2호).
- 라.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제9항).
- 마.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소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156 조제6항).
- 바.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

급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4조의2제2항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상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13호에"를 "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로 한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5조제1항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로 한다.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주식등의 주권·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래소(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18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가상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5제1항 중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다음 각 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2.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18조의7제1항 중 "해당 과세기간"을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으로, "연 250만원"을 "각각 연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득

제119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12.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1조제2항 본문 중 "제10호부터 제12호"를 "제10호부터 제13호"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으로, "유가증권"을 "유가증권·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9조제12호"를 "제119조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9조제11호"를 "제11호"를 "제119조제11호 및 제12호"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부터 제12호"를 "제9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유가 증권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의 양도소 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119조제12호"를 "제119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투자중개업자가"를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거래소가"로, "따라"를 "따라 각각"으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19조제12호바목"을 "제119조제13호바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19조제12호자목"을 "제119조제13호 자목"으로 한다.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제156조의5제1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174조의2의 제목 중 "파생상품 또는 주식"을 "파생상품·주식 또는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
	<u>닌 전자적 증표로서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것(이하 "가상자
	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u>하는 소득</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
	<u> 상자산</u>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u>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 ⑥ (생 략)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다른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フ	1
산 등) ①	-
	_
	_
	_
	_
1. ~ 3. (현행과 같음)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스	
<u> </u>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
	_
	_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스	
<u> </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
	_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3. (생략) <신 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있다.

⑦·⑧ (생 략)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저 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 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 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u>가상자산</u>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
<u>의 20</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⑦・⑧ (현행과 같음)
세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 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 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생 략)
- ②·③ (생 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 ⑧ (생 략)
 -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u>.</u>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u>및 같은 항 제6호</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⑧ (현행과 같음)
9
제9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
ই
_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u>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본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 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 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 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 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주식등의 주
	권·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래소(이
	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
	사등
4]	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신설>

5. (생략)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 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

1. ~ 3. (현행과 같음)
4. 가상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5.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의 세율
11 1 4-1 11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자
<u>산</u>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C U II/ &

자에 대해서는 <u>해당 과세기간</u> 의 양도소득금액에서 <u>연 250만</u> <u>원</u>을 공제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 11. (생 략) <신 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타. (생 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 법) ① (생 략)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

<u>다음 각 호의 소득</u>
별로 해당 과세기간
<u>각각 연 250만원</u>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
<u> </u>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
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소득</u>
<u>13.</u>
<u>ম</u>]
9호부터 제12호까지
가. ~ 타. (현행과 같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
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 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 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 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 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 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 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 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 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 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5 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제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
③ ~ ⑥ (현행과 같음)
세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 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 원천 <u>유가증권양도소득</u>에 대 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u>유가증권</u>의 취득 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 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 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하여 계산한 금액

1
1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u>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u>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u>가상자산양도소득</u>
<u>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u>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u>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u>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u>가상자산양도소득</u>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 유가증권·가상자산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 유가증권·가상자산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 유가증권·가상자산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유가증권·가상자산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 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양도소득

- ② ~ ⑤ (생 략)
-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 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 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 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 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 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

6
게110고 게11중 미 게19중
제119조제11호 및 제12호
유가증권양
도소득 및 국내원천 가상자산양
도소득
1. • 2. (현행과 같음)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9호부터
<u></u> 제13호
 제13호
제13호

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 장수하여 그 원천장수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장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한다.

- 1. ~ 6. (생략)
-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 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 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인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8. <u>제119조제12호</u>에 따른 국내

1. ~ 6. (현행과 같음)
7
<u>유가증권양도소득 및 같</u>
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
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u>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u>
<u>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u>

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 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 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 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 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② ~ ⑤ (현행과 같음)
6
<u>투자중개</u>
업자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거래소가따라
<u>각각</u>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19조제13호바목

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 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 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 ⑨ ~ ⑫ (생 략)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

· ⑨ ~ ⑫ (현행과 같음)
③ 제119조제13호자목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0호, 제11
호 또는 제12호

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 119조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의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
	<u>.</u>
②・③ (현행	과 같음)
제156조의5(비가	·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u> </u>
절차 특례) (D
절차 특례) (D
절차 특례) (<pre>D</pre>
절차 특례) (D
절차 특례) (①
절차 특례) (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 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 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 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의 거래내역 등 제출)(생 략)

<신 설>

,
① ② (처케키 가O)

(2) • (3)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 제174조의2(파생상품·주식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②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 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